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복지용구 대여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내로하되 수급자가 요청할 경우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급자(보호자)의 회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수 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 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 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5. 대여기간 중 거주기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 해야한다.

6.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은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제품의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 별로 납부할 수 있다.